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5. 21 선고 2019가합1054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나1645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5. 21 선고 2019가합105493 판결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이상덕, 전상귀

피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백

담당변호사 윤광기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민희

변론 종결2021. 3. 26.

판결 선고2021. 5. 21.

주 문

1. 피고들과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4. 2. 체결된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76,531,915원, 피고 C은 46,382,979원, 피고 D은 95,085,1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피고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E은 ① 피고 B으로부터 2014. 7. 11.부터 2015. 11. 5.까지 총 243,000,000원을, ② 피고 C으로부터 2014. 7. 31.부터 2018. 1. 16.까지 총 350,000,000원을, ③ 피고 D으로부터 2014. 9. 25.부터 2017. 12. 5.까지 총 205,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단 차용증상의 주채무자는 E의 회계담당 이사였던 F로 되어 있고, E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E이 도급받은 각 건물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내지 전기소방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모두 완공하였다. 원고는 2019. 7. 23. E에 대하여 같은 표의 '미지급액'란 기재 합계 1,156,156,22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이 법원 2019차1142호로 신청하였고, 2019. 7. 30.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9. 9.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1	G	H공장 신축공사	2015.12.29.~2016.5.27.	455,400,000	2016.5.27.	158,400,000
2	I	J 신축공사	2017.1.23.~2018.5.31.	1,090,000,000	2018.5.31.	330,606,227
3	K	L사옥 신축공사	2017.3.21.~2018.8.27.	936,100,000	2018.8.27.	345,400,000
4	M	N 물류센터 신축공사	2017.6.27.~2018.3.23.	545,050,000	2018.3.23.	321,750,000
합계	1,156,156,227					

다. E의 G에 대한 소제기

E은 G를 상대로 H공장 신축공사(위 나.항 표의 제1항 기재 원공사이다)의 미지급 공사대금 294,480,3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6가합104093호,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라. E과 피고들 사이의 2018. 4. 2.자 채권양도계약

1) E은 2018. 4. 2. 각 피고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차용금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E의 상황)

① E은 2018. 9. 30.까지 대여금 전액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이자(피고 B: 매월 2.67%, 피고 C: 3%, 피고 D: 매월 1.38%)는 매월 15일(피고 C) 내지 말일(피고 B, D)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담보의 제공)

① E은 피고들의 대여금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액 중 각 피고의 채권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② 피고들은 제4조 기한이익의 상실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채권 양도양수 통보를 할 수 없다.

제4조(기한이익의 상실)

E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들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① E에 대하여 부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2) E과 피고들은 같은 날 E이 주식회사 G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금 채권 중 ①

피고 B은 165,000,000원을, ② 피고 C은 100,000,000원을, ③ 피고 D은 205,000,000원을 각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E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부여받았다.

마. E의 부도

E은 2018. 10. 22. 부도처리되었다.

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통지

피고들은 2018. 10. 28. G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사. 이 사건 관련소송에 관한 강제조정

이 법원은 2019. 5. 15.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G는 E에게 318,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50,000,000원은 2019. 6. 30.까지 나머지 168,000,000원은 2019. 7. 31.까지 지급한다. 만약 G가 위 분할지급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그 잔액을 지급하되, 그 잔액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G 및 E 모두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2019. 5. 31. 확정되었다.

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양도된 채권의 변제

E, G 및 피고들은 2019. 6. 25.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G가 E에 지급하여야 할 318,000,000원 중 218,000,000원을 피고 B이 76,531,915원, 피고 C이 46,382,979원, 피고 D이 95,085,106원으로 안분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들은 위와 같이 안분받기로 한 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E은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피고들과 통모하여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E이 G에 대하여 가지는 일부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기하여 수령한 돈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원고가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전에 발생하였거나(위 제1의 나.항 기재 표 순번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공사가 완공되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같은 표 순번 2 내지 4),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전부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다. E의 무자력에 관하여

1)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기업은행, O은행, P은행, Q은행, R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무렵 E의 자산 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각 은행	633,799,865	원고	1,156,156,227
피고 B	243,000,000		
피고 C	350,000,000		
피고 D	205,000,000		
F	143,500,000		
S	100,000,000		
합계	633,799,865	합계	2,097,656,227

2) 피고들은 을 제20호증을 근거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E이 48,545,214,869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① 을 제20호증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에 체결된 공사계약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예를 들어, 경기도건설본부의 T시설증축 공사),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공사도 있어 그 채권액 전부가 E에 귀속되는지도 불분명한 점(예를 들어, M의 N 물류센터 신축공사), ② 그와 같은 상당히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E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 뒤인 2018. 10. 22. 부도처리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E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 소송을 진행한 것은 부산항만청과 G에 대한 것이고, 부산항만청과 G에 대한 각 공사대금채권 역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정도로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48,545,214,869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긍정하기 부족하다. 위 채권액 전액을 적극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대상이 된 G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E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약 6개월 뒤에 부도가 날 정도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E의 무자력의 정도는 중한 편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직전인 2018. 3. 31.까지 E의 사내이사로서 E의 위와 같은 자산현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을 위하여 개최된 E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여 그 의결에 찬성하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채권양도의 통지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들은 같은 날 거의 동일한 내용의 서류들을 작성하는 등 한 몸처럼 행동해 왔으므로, 나머지 피고들 역시 E의 자산현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⑤ E는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었음에도 피고들에 대하여만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일부 채무를 변제받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E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G로부터 각 양수금을 변제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피고 B은 76,531,915원을, 피고 C은 46,382,979원을, 피고 D은 95,085,10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영호

판사박형민

판사문혁

별지

1)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